



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■ 항생제 등 전문적인 약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야 합니다.

- 환자는 먼저 병·의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.
 - 의사가 처방전 2부를 환자에게 줍니다. (약국제출용, 의료보험청구용)
 -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야 전문의약품을 살 수 있습니다.
- ☞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맞는 약을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게 되어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들고 약제비도 줄어듭니다.

환자도 자신에게 처방된 약이 어떤 약인지 알 수 있으며,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상호 보완된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.

■ 병·의원에서 약을 타기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.

-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등네 약국에 들러 약을 받으시면 기다리는 시간도 절약되고 친절한 복약지도 도록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예의사항

의약분업을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와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약사법에 의사의 예외 규정과 약사의 예외 규정

을 두고 있습니다.

■ 의사의 직접 조제 허용 사례

-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
-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
- 입원환자, 1종 전염병환자,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-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, 고엽제후유증 환자, 장애인 1급 및 2급, 파킨슨병환자, 나병환자, 장기이식환자,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
- 병역 의무 수행 중인 군인/ 전경/ 교정시설 경비교도, 교정시설/소년보호시설/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자
- 결핵환자(보건소/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)
-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및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경우

■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가 허용되는 사례

-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조제
-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재해구호를 위한 조제

• 경구용 전염병 예방 접종약 및 전단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입니다.

특히,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국민들이나 해당 지역의 의사/약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/고시할 예정입니다. [2]

